

2.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보상금수령권확인 청구

소외 대한○○공사가 2016. 11. 30.자로 수용한 피고 최○○ 소유의 ○○시 ○○구 ○○동 2가 268-1 답 1,448㎡에 대한 손실보상금 331,592,000원 중 156,000,000원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후에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시 압류한 경우의 우선 순위(=선순위 근저당권자 우선)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당해 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후에 그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시 압류한 경우, 그 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그 보상금은 여전히 특정성이 유지되고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지고, 나아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보상금의 수령권이 있다.(전주지법 1997.5.16. 선고 96가합9163 판결)

☐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청구

(제1차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대촌동 754-10 답671㎡에 관하여 1979. 8.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차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31.자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3차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9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4차적청구취지) 소외 한국○○○○공사가 ○○지방법원 2014년 금제1104호로 공탁한 위 같은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손실보상금 30,195,000원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②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③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95다56910 판결, 공1996상, 3516)

☐ 토지수용금수령권확인 청구

피고들은 각 피고 ○○시가 2015. 8. 27. ○○지방법원 2015금제35775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 1,349,202,000원 중 서울 ○○구 ○○동 356-1 하천 138㎡에 대한 보상금 11,385,000원은 원고가 그 수령권자임을 확인하고,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한 위 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기업자가 미등기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예컨대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나 토지조사부의 소유명의자 내지 그 상속인 등) 또는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소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달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서울지법 1992.7.22. 선고 91가단74734 판결)

☐ 영농보상금수령권확인등 청구

피고 김○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약 15,000㎡에 대한 영농경작자 및 피고 한국○○공사가 지급하는 영농보상금 108,305,110원의 수령권자가 각 원고임을 확인한다. 피고 한국○○공사는 원고에게 108,305,11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기한영농보상의 수령권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소정의 영농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항 단서가 비자경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라도 당연히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자가 당해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장래에 당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